

# 「평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6. 02. 26.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 2. 제안이유

-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 등(안 제3조 및 제4조)
-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안 제6조)

- 재정지원(안 제11조)
-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설치(안 제12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어린이 통학로를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시설 설치, 통학환경 개선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군수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검토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어린이 안전교육,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의 경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 정하였고
- 안 제13조에서는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관련 단체,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협의체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음.

## 5.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히 어린이의 이동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학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전확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공공정책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이나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